

제 1307 호  
1986. 8. 16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 보 천  
 편집인 : 공 보 관 이 관 주  
 전 화 : 731-6111-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35-3337

신 권	공 보 관	장 지 (유 단 마)	공 보 계 장	모 조 계 장
1986	시 본			
김 익 기				

# 시 보

## 차 례

◎ 조 례

제 2093 호 :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설치조례	3
제 2094 호 : 서울특별시본청·구청·공무원교육원등의지방공무원선정원조례 개정조례	5
제 2095 호 : 서울특별시중합운동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	5
제 2096 호 : 서울특별시립보건의설치조례개정조례	6
제 2097 호 : 서울시립대학설치조례개정조례	7
제 2098 호 :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	7
제 2099 호 :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설치조례개정조례	8
제 2100 호 :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개정조례	8

< 이 면 제 속 >

공									
발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도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2101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증개정조례	9
③ 규 칙	
제 2141 호 :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사무분장규칙	10
제 2142 호 :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증개정규칙	16
제 2143 호 : 서울특별시립보건의사무분장규칙증개정규칙	16
④ 고 시	
제 593 호 : 돼지고기연동가격고시	16
⑤ 공 고	
제 453 호 : 비료단속검사결과에따른행정처분	17
제 456 호 : 분묘개작공고	17
⑥ 사 령	

조 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 한강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영보 현

◎서울특별시조례 제 2093호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설치조례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설치조  
례문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조 (설치목적) 한강을 효율적으  
로 개발관리하여 시민생활과 관광  
에 기여하는 맑고 아름다운 하천  
으로 발전시키며, 전시 또는 비상사  
태시 시민과 불자의 긴급수송 도강  
을 위한 도강장비와 항구적인 수  
질보존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을 운  
영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  
(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 2조 (위치) 사업소의 위치는 시  
강의 바로 고시한다.

제 3조 (관리지역) 사업소의 관할지  
역 및 관리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조 (소장) ①사업소에 소장 1인

을 두고, 소장은 지방부이사관, 지  
방시설부기감 또는 지방공업부기감  
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  
휘감독한다.

제 5조 (공무원의 정원)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 6조 (사무조직) ①소장 밑에 관리  
과, 방재과 및 시설과와 중랑하수  
처리장, 탄천하수처리장, 안양하수처  
리장 및 난지하수처리장을 둔다.

②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방재  
과장은 지방토목기정 또는 지방서  
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농림기정  
또는 지방토목기정으로, 중랑 및  
탄천 하수처리장장은 지방토목기정 또  
는 지방공업기정으로, 안양 및 난  
지하수처리장장은 지방토목기차, 시  
방기계기차, 지방전기기차 또는 지  
방화공기차로 보한다.

③관력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분서, 관인, 보안 및 인사
2. 기획, 행사, 홍보
3. 예산, 회계 및 결산관리
4. 내야면 어업허가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5. 유선, 도선, 선박에 관한 인·  
허가 및 운영지도 감독
6. 한강내 고수부지 및 수상운수
7. 기타 소내 다른부서의 소관사

<p>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④ 방제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예방 및 대책</li> <li>2. 하천법상 인·허가 업무</li> <li>3. 저수조정비 및 수자원공급</li> <li>4. 수질보존 및 한강생태계에 관한 보호연구</li> <li>5. 수상안전지도 및 긴급구조</li> <li>6. 긴급도강시설의 운영관리 및 훈련</li> <li>7. 하수처리장 지도감독</li> </ol> <p>⑤ 시설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천 이용시설물의 유지관리</li> <li>2. 하천시설물의 설치공사</li> <li>3. 고수부지내 공원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li> </ol> <p>⑥ 하수처리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수처리장시설의 증·보수 및 유지관리</li> <li>2. 분뇨 및 하수의 처리</li> <li>3. 분류하수판트의 유지관리</li> <li>4. 분뇨 및 하수처리방법의 연구 개발</li> </ol> <p>제 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중앙종말처리사업소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한강안전관리대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p>	
<p>(별표) <u>한강관리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u></p>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3 급	1	행정, 시설 또는 공업직 1
4 급	5	행정직 1, 토목 또는 행정직 1, 농림 또는 토목직 1, 토목 또는 공업직 2
5 급	20	행정직 6, 행정 또는 별정직 1, 토목직 3, 행정 또는 화공직 1, 농림직 2, 선박직 1, 토목, 기계 또는 전기직 2, 토목, 기계, 전기 또는 화공직 4
6 급	42	행정직 12, 행정 또는 별정직 4, 화공직 5, 토목직 5, 농림직 2, 선박직 1, 토목, 기계 또는 전기직 6, 기계, 전기 또는 화공직 5, 기계 또는 전기 2
7 급	64	행정직 20, 토목직 10, 행정 또는 별정직 3, 기계직 10, 선박직 1, 수산직 1, 농림직 2, 전기직 10, 화공직 6, 건축직 1
8 급	59	행정직 14, 토목직 10, 농림직 4, 선박직 1, 화공직 8, 기계직 10, 전기직 11
9 급	41	행정직 9, 행정 또는 별정직 10, 토목직 5, 화공직 4, 농림직 2, 기계직 5, 전기직 5, 건축직 1
별정직	6	7급상당 1 (기상요원), 8급상당 5 (공해추정기사)
기능직	279	6등급: 기계 또는 전기장 72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기능직		7등급: 기계 또는 전기장 87, 신장 1, 통신장 1 8등급: 기계 또는 전기원 117, 9등급: 선원 1
고용직	404	기계공 137, 전공 46, 타가원 11, 운전원 20, 수위 12, 청부 11, 전달부 5, 감시원 44, 원정 7, 조절수 71, 잡무원 40
합 계	921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증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시장 영 보 현(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2094 호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정원증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증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가. 일반회계중 6급정원 "383" 을 "382" 로 하고 정원내용중 토목직 "34" 를 "33" 으로 하며, 7급정원 "474" 를 "470" 으로하고 정원내용중 토목직 "51" 을 "48" 로 하고 "수산직 1" 을 삭제하며 합계란 정원 "1,655" 를 "1,650" 으로 한다.

(별표 2) 구청 지방공무원 정원표가. 일반회계중 고용직정원 "1,929" 를 "1,912" 로 하고 정원내용중 원정 "37" 을 "32" 로 감시원 "482" 를 "470" 으로하고 합계란 정원 "8,142" 를 "8,125"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시장 영 보 현(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2095 호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지방공무원정원표중 9급직급란 다음에 의료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직 급	정 원	정원내용
의 료 직	2	간호원 2

7급정원 "15" 를 "14" 로 하고 정원내용중 "간호직 1" 을 삭제하고, 8급정원 "10" 을 "9" 로 하고 정원내용중 "간호직 1" 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보건소설치조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 서울특별시조례 제 2096 호

서울특별시립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소장) 제 1항중 "소장은 지방의무국장 또는 지방보건기정으로"를 "소장은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정으로"로 하고,  
제 4 조 (하부조직) 제 2항중 "보건지도과장은 지방의무국장, 지방약사기과 또는 지방간호기과로"를 "보건지도과장은 지방의사, 지방약사 또는 지방간호원으로"로 하고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건소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4 급	17	보건직 17 (단, 의사와 복수직)
5 급	17	보건직 17
6 급	51	행정직 17, 보건직 34
7 급	69	행정직 35, 보건직 34
8 급	111	행정직 17, 보건직 94
9 급	101	행정직 17, 보건직 84
의료직	563	의사, 약사 또는 간호원 17, 약사 69, 간호원 477
고용직	237	운전원 87, 수위 20, 타자원 17, 방역기사 53, 행정보조원 17, 청부 19, 전공 2, 기계공 5, 전달부 17
합 계	1,16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시립 대학설치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097 호**

서울시립대학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시립대학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울시립대학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9급 직급란 다음에 의료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의료직	1	간 호 원 1
7급정원 "16"을 "15"로 하고 정원내용 중 "간호직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6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098 호**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9급 직급란 다음에 의료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계급란	정 원	정 원 내 용
의료직	1	간 호 원 1
7급정원 "32"를 "31"로 하고 정원내용 중 "간호직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립아동상담소설치조례개정 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86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조례제 2099 호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설치 조례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9급 직급관 다음에 의료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직 급 의 료 직	정 원 1	정 원 내 용 간호원 1	
7급정원 "2"를 "1"로하고 정원내용중 "간호직 1"을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개정 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86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조례제 2100 호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설치 조례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설치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중 "8급" 란을 삭제하고 "8급"란에 의료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직 급 의 료 직	정 원 1	정 원 내 용 간호원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 조례을 이에 공포한다.

1986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조례제 2101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원장) 제 2 항중 “원장은 지방의무부기장으로”를 “원장은 지방의사로”로하고

제 6 조 (진료과목) 제 2 항중 “약제과장은 지방약무기장으로”를 “약제과장은 지방약사로”로하고, “간호과장은 지방간호기사로”를 “간호과장은 지방간호원으로”로하고, “의료기수리기사는 지방의무기장 또는 지방의무기장”을 “의료기수리기장 또는 지방의무기장”으로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다음과 같이 한다.

지 방 공 무 원 정 원 표

직 급	정 원	정 원 내 용
5 급	5	행정직 5
6 급	18	행정직 10, 보전직 8
7 급	22	행정직 12, 보전직 10
8 급	29	행정직 19, 보전직 10
9 급	40	행정직 12, 보전직 28
의료직	348	의사 5, 약사 28, 간호원 315
병정직	22	7등급상당 22 (영양사 5, 뇌파기사 2, 특수조사 5, 심전도기사 5, 교압가스관리기사 5, 의료기수리기사 3)
기능직	10	7등급 10 (기계장 5, 전기장 5)
고용직	274	운전원 11, 전공 7, 기계공 18, 수위 32, 타자원 5, 인공물재봉사 6, 방역기사 12, 교환원 16, 청부 24, 전달 5, 보조원 11, 행정보조원 4, 감시원 13, 잡무원 75.
합 계	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사무분장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6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영보 현업

○ 서울특별시규칙제 141 호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사무

**분 장 규 칙**

서울특별시한강관리사업소 사무분장을  
다음과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의 하부조직과 그사무 분  
장 및 관리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관리과 ) ① 관리과에 서무계,  
운항계, 기도계 및 청소계를 두고,  
서무계장 기도계장 및 청소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항계장은 지방  
선박기좌로 보한다.

② 관리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과와 같다.

1. 서무계

- 가. 문서, 관인, 보안 및 청중단속
- 나. 인사, 복무, 교육훈련 및 상훈
- 다. 급여 및 직원후생

과. 경사, 장비 및 차량의 유지관리  
야. 의식, 체육, 홍보에 관한 사항  
바. 직장세비군 및 민방위대에  
관한 사항

사. 기본관리 계획 및 심사분석  
야. 예산의 편성 및 총괄  
자. 회계 및 물품관리  
차. 세입 및 세출의 총괄  
카. 기타 다른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운항계

가. 유선 및 도선업의 선박, 선박  
처리

나.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다. 측량의 운송 및 선박의 운항  
여가와 안전조치

라. 유선, 도선, 선박 운영에 관  
한 지도감독

로. 항로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  
바. 관광선 건조, 수리 및 관리  
사. 선박내 행정질서 지도단속

3. 기도계

가. 내수면 어업허가 및 제한조치  
나. 불법어로 및 조수수령행위 제  
도 단속

다. 하천의 무단점용 및 위법시  
설물 설치 단속

라. 하천시설물의 훼손행위 단속  
마. 오물투기 및 무분별한 유해행  
위 단속

바. 행정질서 유지 및 풍기정화  
지도 선도

<p>사. 미아, 유실물 보호, 보관</p> <p>아. 하천감시원 근무 감독 및 보고사항 처리</p> <p>자. 무단 수상이용 행위 제도방제</p> <p>차. 수영장 운영에 관한사항</p> <p>타. 기타 인.허가 위반사항의 시정조치</p> <p>4. 청소계</p> <p>가. 고수부지내 공원 및 녹지대 청소</p> <p>나. 강변도로 사면지 및 제방의 청소</p> <p>다. 수상부유 오염수거</p> <p>라. 청소원 임용 및 작업관리</p> <p>마. 공중잔이변소, 공중 쓰레기용기 설치관리</p> <p>바. 청소차량, 장비관리</p> <p>사. 기타 한강내 청소에 관한사항</p> <p>제 3 조 ( 방 제 과 ) ① 방제과에 방제계획제, 치수계, 환경보전계 및 안전계를 두고, 방제계획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치수계장은 지방토목기좌로, 환경보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화공기좌로, 안전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② 방제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방제계획계</p> <p>가.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계획 수립</p> <p>나. 한강 재해대책반의 설치 및 상황실 운영</p>	<p>다. 수방단의 조직</p> <p>라.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 출동 협조 요구</p> <p>마. 강의구역 설정 및 지장물 철거</p> <p>바. 복구공사 동원 명령조치</p> <p>사. 재해대책 작성 및 수질보전에 관한 업무</p> <p>아. 피난경고 및 정보통신 관리</p> <p>자. 수위 측정 및 홍수량의 측정</p> <p>차. 과내 다른계의 구관에 관한 지 아니하는 사항</p> <p>2. 치수계</p> <p>가. 수자원 조달 및 공급</p> <p>나. 하상정리 및 저수지 관리</p> <p>다. 사철의 검용관리</p> <p>라. 유전장, 스키야크의 관리</p> <p>마. 도서등 산출물의 처리관리</p> <p>바. 정용로 및 여과수유수요 정수사, 중유수면 개관 면허</p> <p>아. 하천의 저수변경, 동기능 공유화 조사</p> <p>자. 동유수면의 검찰 실시조사</p> <p>3. 환경보전계</p> <p>가. 하수처리장 수질 검출관리 및 한사항</p>
---	---

나. 수질보호 및 개선계획과 대책 수립

다. 하천 오염의 조사분석 및 방지

라. 수산자원 보호 및 증식 방류

마. 수중 동·식물 및 조수의 조사연구

바. 한강 생태계개 관한 연구 및 자료관리

사.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4. 안전제

가. 수상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세움

나. 수상시설의 구난조치 및 인명 긴급 구조

다. 긴급 도장 수단의 연구 및 개발

가. 도장 교육 및 훈련 실시

제 4 조 ( 시설 과 ) ① 시설과에 시설 1 제, 시설 2 제, 녹지 1 제 및 녹지 2 제를 두고, 시설 1 제장과 시설 2 제장은 지방토목기과로, 녹지 1 제장과 녹지 2 제장은 지방농림기과로 보한다.

② 시설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 1 제

가.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

나. 수중보 수문조작 및 유지관리  
다. 강북측 접안시설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지도감독

라. 강북측 제방, 호안 시설의 관리 및 공사

마. 강북측 교수부지내 진입로,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

바. 강북측 시설물의 토목공사  
사. 파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시설 2 제

가. 수영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나. 강남측 접안 시설관리

다. 강남측 제방, 호안 시설의 관리 및 공사

라. 강남측 교수부지내 진입로,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

마. 강남측 시설물의 토목공사

3. 녹지 1 제

가. 교수부지 이용 종합계획 수립

나. 강북측 교수부지내 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다. 강북측 교수부지내 공원사료 정수

라. 강북측 교수부지 초지조성 및 유지관리

마. 강북측 강변도로 사면기, 녹지대 관리

바. 강북측 제방의 사방 및 녹지 조성

사. 강북측 교수부지내 식물 재식허가

아. 기타 녹지 2 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녹지 2 계  
 가. 강남측 고수부지내 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나. 강남측 고수부지내 공원사용료 징수  
 다. 강남측 고수부지 초지조성 및 유지관리  
 라. 강남측 강선도로 사면지, 녹지대 관리  
 마. 강남측 제방의 사방 및 녹지조성비 등 강남측 고수부지내 식물의 재식 등이  
 제 5 조 (중랑 및 탄천하수처리장) ① 중랑하수처리장과 탄천하수처리장에 관리과, 수처리과 및 오니처리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처리과장은 지방토목기과, 지방기계기과 또는 지방전기기과로, 오니처리과장은 지방토목기과 지방기계기과, 지방전기기과 또는 지방화공기과로 보한다.  
 ② 관리과에 서무계, 경리계 및 시설계를 두고, 서무계장, 경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시설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하며,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자호와 같다.  
 1. 서무계  
 가. 문서, 인사, 보안 및 관인관수  
 나. 기획, 예산에 관한 사항  
 다. 복무, 급여와 직원 후생  
 라. 운영요원의 교육훈련 계획수립  
 마. 직원 숙소관리  
 바. 직장에비준 및 민방위대 운영

사. 의견, 공보에 관한 사항  
 아. 처리장내 다른과 및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리계  
 가. 예산 제출과 집행 및 결산  
 나. 사업의 원가계산 및 경영분석  
 다. 사업의 세입 지출과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입보고  
 라. 봉사, 제조 및 물품의 구매 조달  
 마. 물품관리 및 자산관리  
 3. 시설계  
 가. 하수처리시설의 보수, 개량 및 유지관리 (기전사항 제외)  
 나. 수처리장 분장하수관로 유지관리  
 다.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위한 설계 및 시공감독 (기전사항 제외)  
 라. 장내 토사, 식물, 구조물, 시설의 관리  
 마. 기타 처리장내 일반적 업무  
 ③ 수처리과에 수처리 1 계, 수처리 2 계 및 수질시험을 두고, 수처리 1 계장과 수처리 2 계장은 지방토목기사, 지방기계기사 또는 지방전기기과, 수질시험장은 지방화공기과로 보한다.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자호와 같다.  
 1. 수처리 1 계  
 가. 중계 펌프장의 유지관리 및 운전

<p>나. 1차 처리시설 (분배조, 침사지, 생이수펌프장, 1차침전지)의 유지관리 및 운전</p> <p>다. 1차 처리시설의 기전설비의 보수개량 및 유지관리</p> <p>라. 1차 처리시설의 처리분석 및 검토        마. 화재 및 수해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        바. 중앙감시반 유지관리 및 운전        사. 기타 관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수처리 2계</p> <p>가. 2차 처리시설 (포기조, 2차침전지, 염소접촉지, 방류펌프장)의 유지관리 및 운전</p> <p>나. 장내 배수펌프장 (장안유수지, 전동유수지)의 유지관리 및 운전</p> <p>다. 2차 처리시설의 기전설비의 보수개량 및 유지관리</p> <p>라. 2차 처리시설의 처리분석 및 검토</p> <p>3. 수질계</p> <p>가. 하수처리 시스템의 분석 및 검토</p> <p>나. 시험, 분석 및 수질공해 측정</p> <p>다. 시험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p> <p>라. 각종 통계 발간</p> <p>④오니처리과에 처리 1계, 처리 2계 및 처리 3계 (중량하수처리장에 한함)를 두고, 계장은 지방기계기사, 지방전기기사 또는 지방화공기사로 보하며,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p>	<p>같다.</p> <p>1. 처리 1계</p> <p>가. 오니처리시설 (소화, 농축, 가스발전기, 보일러)의 유지관리 및 운전</p> <p>나.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유지관리 및 운전</p> <p>다. 오니처리시설 보수개량 및 증설계획</p> <p>라. 오니처리시설의 처리분석 및 검토</p> <p>마. 기타 관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처리 2계</p> <p>가. 탈수시설 (약품투입시설, 탈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전</p> <p>나. 탈수시설 보수개량 증설계획</p> <p>다. 오니처리 방법의 연구</p> <p>라. 오니폐기물 처리</p> <p>3. 처리 3계 (중량하수처리장에 한함)</p> <p>가. 분뇨의 위생적 처리</p> <p>나. 분뇨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전</p> <p>다. 분뇨처리시설의 보수개량 및 증설계획</p> <p>라. 분뇨처리장에 투입되는 분뇨 및 분뇨차량 단속</p>
---	--

<p>마. 부산물관리 및 관매</p> <p>바. 기타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p> <p>제 6 조 (안양 및 난지하수처리장)</p> <p>①안양하수처리장과 난지하수처리장에 관리제, 처리제, 기전제 및 위생처리계를 두고,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처리계장은 지방토목기사, 지방기계기사 또는 지방전기기사로, 기전계장은 지방기계기사 또는 지방전기기사로, 위생처리계장은 지방화공기사로 보한다.</p> <p>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관리계</p> <p>가. 문서, 인사, 보안 및 관린관수</p> <p>나. 기획 및 예산</p> <p>다. 복무급여와 직원후생</p> <p>라. 직장에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p> <p>마. 사업의 세입지출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p> <p>바. 공사계약 및 물품의 구매조달</p> <p>사. 물품관리 및 재산관리</p> <p>아. 기타 처리장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처리제</p> <p>가. 하수처리시설의 보수, 계량 및 유지관리(기전사항 제외)</p> <p>나. 장내 토지, 건물, 구조물 수도 시설 도로의 유기관리 및 보수</p> <p>다. 중계펌프장의 유지관리 및 운전</p> <p>라. 하수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p> <p>마. 시험분석 및 수질측정</p>	<p>바. 수계별 분류하수관로의 유지관리</p> <p>3. 기전제</p> <p>가. 전기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전</p> <p>나. 오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전</p> <p>다. 오폐수처리시설의 처리분석 및 검토</p> <p>4. 위생처리제</p> <p>가. 정화조 오폐수의 위생처리</p> <p>나. 정화조 오폐수처리 기전설비의 보수계량과 유지관리</p> <p>다. 정화조 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기전설비</p> <p>라. 정화조 처리시설 유지관리</p> <p>제 7 조 (관리지역 및 시설) 관공사업소가 설치조례에서 정한 관리지역을 집행하기 위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특별지정하여 관공사업소가 설치되며, 하수처리장 및 관공사업소 설치지역을 포함한다.</p> <p>②사업소의 관리대상 시설물은 제 1항에서 규정한 지역내의 시설물 관리하여야 할 하천시설물과 하천이용시설물 및 분류하수관로로 차폐된 한강에 연한 도로, 조랑, 하수 및 우수시설과 수문은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p>
---	---

② (폐지부칙) 이규칙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종합종말처리사업소 사무분장규칙 및 서울특별시한강안전관리대 사무분장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6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규칙제 2142 호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5 조 (하수과) 제 2 항 제 4 호중 "다"목을 삭제하고

제 56 조 (치수과) 제 2 항 제 2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바. 한강관리사업소의 지도감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립보건소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6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규칙제 2143 호

서울특별시립보건소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보건소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보건지도과) 제 1 항중 "가족계획계장은 지방간호기사 또는 지방보건기사로"를 "가족계획계장은 지방간호원 또는 지방보건기사로"로 하고, "의약계장은 지방약무기사, 지방보건기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를 "의약계장은 지방약사, 지방보건기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593 호

돼지고기 연동가격 고시

최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규정(농수산부 고시 제

85-47호, '85.8.22)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의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6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시장

- 1. 돼지고기 연동가격  
돼지고기(정육 500그램당) 2,050원
- 2. 시행일  
1986.8.19부터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453 호

비료단속 검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비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비료생산업에 대하여 행정 처분하였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6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시장

- 1. 허가번호: 제 1-1호
- 2. 허가년월일: 1984.9.6

- 3. 대표자 성명: 홍연식
- 4. 대표자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방배동 734-1 한아름빌 201호
- 5. 사업장 소재지: 서울 도봉구 방학동 7번지
- 6. 상 호: 서울러원주
- 7. 비료의 종류 및 품목  
제3종 복합비료 10-12-11(원비율)  
질소전량: 10%, 인산전량: 12%  
가리전량: 11%, 유기물: 10%  
구동성고토: 2%, 수용성붕소: 0.3%
- 8. 행정처분내역: 경고
- 9. 사 유: 기준미달 (질소전량) 보증량: 12%  
분석결과 미달량: 1.14% (9.5%)

◎ 서울특별시공고제 456 호

분묘개장공고

매장 및 묘지등의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시행규칙 제7조이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하오니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명분묘로 간주하고 임의 개장하길음을 공고한다.

1. 분도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지번	기수		
서울 은평구 수색동	산 1-15	1		
"	산 1-16	3		
"	산 1-23	3		
2. 개장사유 : 수색점문소 건물신축에 지장초래		4. 신고처 : 은평구청 민방위과 (전화: 89-9382)		
3. 공고기간 : 1986년 8. ~ 1986.9. (1개월)		1986.8.16 서울특별시장		
<b>사 령</b>				
◎ 1986년 8월 13일자		영제 351호		
성명	발령사항	호봉	직급	
나승열	보건환경연구소	1호봉	지방보건연구사시보	
박원희	"	1호봉	"	
이해식	"	3호봉	"	
한창훈	성동구	1호봉	지방수의사보시보	
이성호	서울대공원관리사무소	5호봉	지방통신키원	
김형호	강서구	3호봉	지방축산기원보시보	
송두용	서울대공원관리사무소	2호봉	"	
이영미	강동구보건소	1호봉	지방보건(병리)기원보시보	
◎ 1986년 8월 11일자		영제 354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위	직급
김상범	내무국근무	통계담당관	통계기준계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기춘	"	세정과	세외수입계장	"

◎ 1986년 8월 12일자 영제 355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위	직급
김홍래	복지읍 명합	종합종말처리사업소	동해측정기사	지방별정직 8급 상당

◎ 1986년 8월 14일자 영제 356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종철	운수 1과 (개인택시 면허업무 심사반 요원)과전 ( '86.8.14 ~ 8.31 )	성동구	지방행정서기
최홍	"	구로구	"
이정규	"	강서구	"
안경식	"	은평구	지방행정서기보
이정권	"	동작구	"
이윤범	"	성동포구	"

◎ 1986년 8월 14일자 영제 357 호

성명	발령부서	직급	원부서	직위	직급
김주일	투자관리관	지방부이사관	경제기획원	동계계획관	부이사관

◎ 1986년 8월 14일자 영제 358 호

성명	발령부서	호봉	발령직급	비고
김종정	은평구 보건소장	6	지방의사	신규

◎ 1986년 8월 14일자 영제 359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배민호	장묘사업소 과전 ('86.8.18 - '86.12.31)	종합건설본부	지방선정기사

◎ 1986년 8월 14일자		영계 360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성달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의 무효확인 결정('86.11.28 사건 86-184)에 의거 '86.5.22 자 해임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사무관			
◎ 1986년 8월 18일자		영계 361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최진호	대통령 경호실 파견근무 ('86.8.20 ~ '87.8.19)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목적	경비
민방위국	운영과장 (서기관)	신중식	미국 영국	'86.8.18-8.31 (14일간)	민방위운영실태 비교연구	사비 부담
◎ 1986년 8월 14일 조사통계국통계계획관실계획관 부이사관 김주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술을 명함 대통령				◎ 1986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지방부이사관 권문용 부이사관에 명함. 경제기획원 근무를 명함. 대통령		